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4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한도 상향 조정 등 (유동수의원안, 서영교의원안)	2

I. 개요

1.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6. 5.
- (3) 회 부 일 : 2024. 6.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며, 총급여액의 구간별로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74만원의 공제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자산가 위주의 감세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현행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에서 “산출세액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의 구간별 공제한도를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9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 한도 상향 조정 등 (유동수의원안, 서영교의원안)

현행	유동수의원안	서영교의원안
☐ 근로소득세액공제(제59조)	☐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 한도 상향 조정 등	☐ 총급여액 구간별 공제 한도 상향 조정 등
○ 공제율(산출세액 기준) - <u>130만원</u> 이하: 55% - <u>130만원</u> 초과: 30%	○ 공제율(산출세액 기준) - <u>180만원</u> 이하: 55% - <u>180만원</u> 초과: 30%	○ 공제율(산출세액 기준) - <u>200만원</u> 이하: 55% - <u>200만원</u> 초과: 30%
○ 공제 한도(총급여액 기준) - 3,300만원 이하: <u>74만원</u> - 3,300만원~7,000만원: <u>74~66만원</u> * $\text{Max}\{\text{74만원} - (3,300\text{만원 초과 급여액} \times 0.8\%), \text{66만원}\}$ - 7,000만원~1.2억원: <u>66~50만원</u> * $\text{Max}\{\text{66만원} - (7,000\text{만원 초과 급여액} \times 1/2), \text{50만원}\}$ - 1.2억원 초과: <u>50~20만원</u> * $\text{Max}\{\text{50만원} - (1.2\text{억원 초과 급여액} \times 1/2), \text{20만원}\}$	○ 공제 한도(총급여액 기준) - 3,300만원 이하: <u>90만원</u> - 3,300만원~7,000만원: <u>90~75만원</u> * $\text{Max}\{\text{90만원} - (3,300\text{만원 초과 급여액} \times 0.8\%), \text{75만원}\}$ - 7,000만원~1.2억원: <u>75~55만원</u> * $\text{Max}\{\text{75만원} - (7,000\text{만원 초과 급여액} \times 1/2), \text{55만원}\}$ - 1.2억원 초과: <u>55~20만원</u> * $\text{Max}\{\text{55만원} - (1.2\text{억원 초과 급여액} \times 1/2), \text{20만원}\}$	○ 공제 한도(총급여액 기준) - 3,300만원 이하: <u>100만원</u> - 3,300만원~7,000만원: <u>100~85만원</u> * $\text{Max}\{\text{100만원} - (3,300\text{만원 초과 급여액} \times 0.8\%), \text{85만원}\}$ - 7,000만원~1.2억원: <u>85~60만원</u> * $\text{Max}\{\text{85만원} - (7,000\text{만원 초과 급여액} \times 1/2), \text{60만원}\}$ - 1.2억원 초과: <u>60~20만원</u> * $\text{Max}\{\text{60만원} - (1.2\text{억원 초과 급여액} \times 1/2), \text{20만원}\}$

* 유동수의원안 2024. 6. 5. 제출(의안번호 134), 서영교의원안 2024. 6. 5. 제출(의안번호 174)

☐ 2건의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시 55%의 상대적으로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구간을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유동수의원안은 높은 공제율(55%)을 적용하는 산출세액 구간을 현행 130만원 이하에서 18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총급여액 기준 공제한도를 3,300만원 이하는 90만원까지,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구간은 90만원에서 75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의 구간은 75만원에서 55만원까지, 1억 2,000만원 초과 구간은 55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이고,

서영교의원안은 높은 공제율(55%)을 적용하는 산출세액 구간을 2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3,300만원 이하는 100만원까지,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구간은 100만원에서 85만원까지,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의 구간은 85만원에서 60만원까지, 1억 2,000만원 초과 구간은 60만원에서 20만원까지로 확대하려는 것임.

□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 부과한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써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55%를 공제하고, 1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하며, 공제한도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음.

□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의 높은 공제율 적용 구간과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됨.

첫째, 근로소득자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소득이 비교적 낮은 구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공제액 대비 큰 폭의 세액 감면을 적용받게 됨.

예를 들어,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200만원이고 총급여액이 3,300만원 이하인 경우 현행 제도에 따르면 7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유동수의원안에 따르면 90만원(21.6% 상승), 서영교의원안에 따르면 100만원(35.1% 상승)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둘째,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인 조세부담 증가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15년 55% 공제율이 적용되는 산출세액 기준을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확대하고 최대 세액공제한도를 66만원에서 74만원으로 확대한 이후, 누적물가상승률이 17.6% 수준에 달하고 있으나 공제율 및 공제한도가 조정되지 않아 근로소득자의 실질 조세부담이 커지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음.

근로소득공제 확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소비자 물가지수	94.9	97.6	99.5	102.5	111.6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등을 확대하더라도 2022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¹⁾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해당 공제의 혜택 적용이 불가능하여 정책 대상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대기업·자산가 위주의 세제 지원에서 벗어나 중·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발의된 것인데, 저소득 면세자는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한계로 보임.

둘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면세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반을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는 2014년 이후 그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본공제액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가 다시 증가하여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개혁의 원칙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

(단위: %)

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중	48.1	46.8	43.6	41.0	38.9	36.8	37.2	35.3	3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 2024

셋째, 개정안은 대규모 세수감소를 초래하여 재정수요에 대응한 재정여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음.

1) 2022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는 690만명(33.6%)임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가장 큰 비중 (2022년 기준 51.7%)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등을 확대할 경우 과세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보임²⁾.

또한, 2023년도 세수결손이 약 56조 4,000억원에 달하였고 2024년 9월 정부의 세수 재추계 결과 약 29조 6,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문 의 처
02)6788-5154

2) 2022년 귀속소득 기준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규모는 약 8.1조원으로, 전체 세액공제 규모의 51.7%를 차지함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